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창진

전화 051-780-4308

보도자료

2021. 6. 8.(화)

제 목

부동산투기사범 및 지역재개발조합 비리 사범 적발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타인 명의차용, 위장전입 등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부동산투기사범 및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조합, 신탁사 자금을 횡령한 지역재개발 조합 비리 사범을 적발해 총 5명을 구속 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음
 - 2010년부터 조직적으로 부산, 울산, 밀양 등 부울경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및 수도권까지 전국을 무대로, 명의차용, 위장전입 등 방법으로 총 37채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해 약 4억 9천만 원(신고 기준)의 프리미엄을 취득한 부동산 투기 사범 2명 구속 기소, 명의를 빌려준 10명 불구속 기소
 - 2017. 11.경 12명의 명의를 빌려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 하여 12세대 아파트 분양권(이득액 약 14억 원)을 취득한 주택재개발 조합 대의원 1명 구속 기소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중 분양대행 용역 체결, 허위사업비 청구 등의 방법으로 약 22억 7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약 8억 원을 횡령한 조합 추진위원장 등 2명 구속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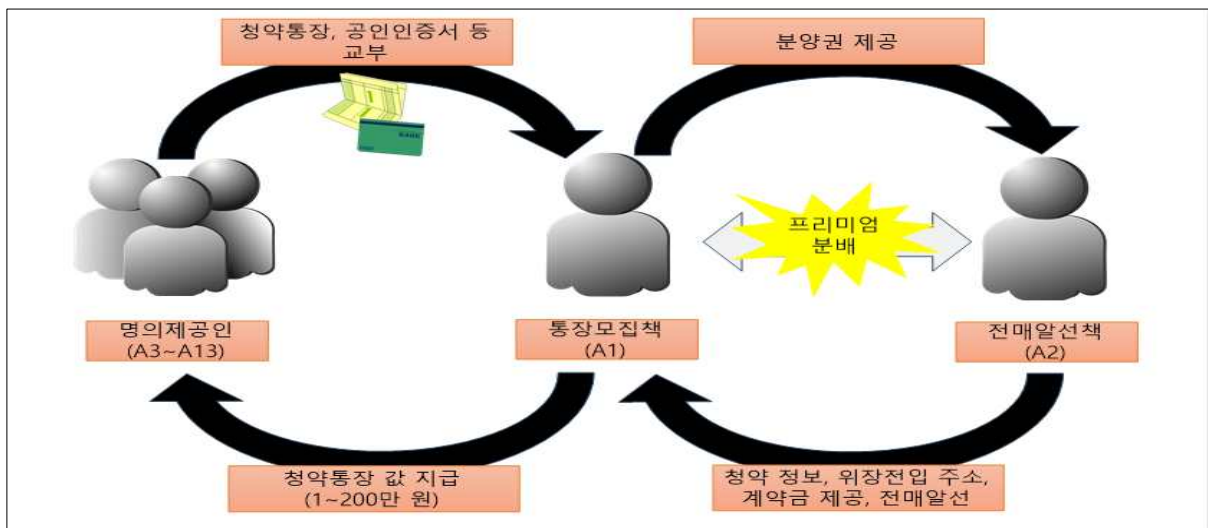
I 아파트 부정청약 · 불법전매 사건

○ 피고인

- A1(52세, 자영업), A2(49세, 무직)
- A3 ~ A12(주택청약 명의제공인)

○ 공소사실 요지

- [A1, A2]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6. 6. ~ 2017. 1. 부산, 속초시 소재 아파트 4채, 2018. 6. 20. 안양시 소재 아파트 3채를 공급받고, 전매 제한기간을 위반해 전매[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 [A1] 2015. 12. ~ 2020. 3.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소재 아파트 24채를 공급받고, 2012. 12. 타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받음[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 [A2] 2016. 6. ~ 2020. 8. 타인 명의를 차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 소재 아파트 총 6채를 공급받고, '16. 6. ~ '20. 8.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총 12건의 아파트 전매를 알선[업무방해,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 [A3~A12] A1, A2와 공모하여 2015. 3. ~ 2020. 8. 위장전입, 명의대여 등 방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아 전매[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 수사 경과

- 2021. 3. 29. A2 인지(2020. 12. 29. A1 인지)
- 2021. 5. 20. A1, A2 구속
- 2021. 6. 8. A1, A2 구속 기소 및 A3~A12 불구속 기소

II

B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사건

○ 피고인

- C(57세, B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 공소사실 요지

- 2017. 11. 12명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후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부정한 방법으로 12세대 분양권을 취득하고 위계로써 조합의 분양업무 방해[업무방해, 주택법위반]

○ 수사 경과

- 2021. 2. 경찰, 기소 의견 송치
- 2021. 4. 29. C 구속
- 2021. 5. 19. C 구속 기소 및 범죄수익 추징보전 청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다주택자도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명의대여를 통해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행위로 기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III

D지역주택조합 사건

○ 피고인

- E1(43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 E2(51세, D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F 실제 운영자)

○ 공소사실 요지

- [E1, E2] 2016. 5. ~ 2017. 1. 필수사업비 지출 용도로 교부받은 신탁자금 7억 9,078만 원을 임의 소비[특경법위반(횡령)]
- [E1, E2] 2016. 11. 용역 금액을 부풀리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액한 용역비 11억 원을 되돌려받아 사용[특경법위반(배임)]
- [E1, E2] 2016. 10. 차용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신탁자금 11억 880만 원 교부받아 사용[특경법위반(배임)]

○ 수사 및 재판 경과

- 2020. 12. 2. E1, E2 각 구속 기소
- 2021. 4. 27. 1심 선고(E2 : 징역 6년, E1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IV

참고사항

-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을 방해하고 프리미엄을 붙여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아파트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업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적극 수사해 엄단하고,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했음
- 당청은 현재 공범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임